

제22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9.5.)

조례안 검토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차 상 옥]

목 차

1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 -----	1
2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3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8. 22.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8. 23.

2. 제정이유

- 백두대간의 문화·역사·생태 자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거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건립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목적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교육장 설치·운영

나. 위치에 관한 규정(안 제2조)

- 거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위치는 고제면 빼재로 2325

다. 업무 및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백두대간의 자원과 가치를 알리고, 발굴·보존·전시 등의 역할

라. 개관 및 휴관, 관람 시간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5조)

- 휴관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한 날
-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마. 입장료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제8조, 별표1 · 2 · 3)

○ 입장료

(단위: 원)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2,000	1,000	1,000	500	500	200

- 무료입장 대상: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공무수행자, 거창군민, 국민 등

○ 시설 사용료

- 숙박시설: 성수기 70,000원, 비수기 50,000원
- 세미나실: 4시간 50,000원, 8시간 100,000원, 1일 150,000원

- 시설 사용료 면제대상: 국민 · 외교사절단, 공무 수행자

바. 입장 및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등은 입장 제한
-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등은 하여서는 아니 됨.
- 행위제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퇴장을 명할 수 있음.

사. 시설 사용의 예약 및 반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제10조, 별표 4)

- 시설 사용 예약자는 시설 사용료를 지정계좌에 입금
- 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 취소 시기에 따라 반환(20퍼센트~전액)
- 시설의 긴급 개선 · 보수를 할 경우에는 사용제한

아. 편의시설 설치 · 운영, 위탁 운영, 전시물 등의 기증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생태교육장에 판매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생태교육장을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 · 운영할 수 있다.
- 전시물 등의 기증에 관하여는 「거창박물관조례」 준용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 조치: '16년도 예산 55,573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6. 6. 13. ~ 2016. 7. 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거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입장료 및 무료입장 대상 규정(안 제6조, 별표 1·2))

- 시설사용료 및 면제대상 규정(안 제8조, 별표 3)

-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규정(안 제9조, 별표 4)

○ 위 주요내용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 및 관내 타 시설물 사례 등을 비교·검토하여 결정 하였으나,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과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입장료 및 무료입장 대상, 시설 사용료 및 면제대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4.9.12.] [법률 제12414호, 2014.3.11., 일부개정]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 설치 및 유기영농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 증진사업
3.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의 설치사업
4. 백두대간의 복원·복구 사업 또는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지원
5. 백두대간의 생태계·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伐採)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감소분 지원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 편의, 소득 증대 또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지원 대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2.23.]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

제11조의6(그 밖의 주민지원사업)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친환경에너지 재생 및 활용시설
2. 오수 처리시설,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3. 마을회관 및 가로등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4. 백두대간 생태교육·체험 등을 위한 시설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거창군소비자보호조례」

[시행 2016.7.20.] [조례 제2328호, 2016.7.20., 일부개정]

제3장 거창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22조(설치)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시책을 심의·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에 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제2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비자보호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주요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4. 군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상하수도요금, 공업용수사용료,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주차요금,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용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 ❖ 백두대간 권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생태교육장을 조성
- ❖ 산림자원의 경제, 환경적 가치상승 및 관광자원화와 숲을 행복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

□ 사업개요

- 위 치: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51-13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13년 ~ 2016년(현공정 93%)
- 사업량: 생태교육장 조성 1식(건축연면적 1,892.51㎡)
 - 실내교육장: 백두대간 역사관, 문화관, 전시관, 영상관 등
 - 편의시설: 게스트 하우스(4동/8실), 백두대간 안내센터
 - 야외시설: 생태탐방로, 소공원, 전망대, 실외교육장, 야외무대 등
- 총사업비: 10,000백만원(국비 5,200 도비 1,440 군비 3,360)

구 분	총 사업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0,000		400		5,300		4,300
국 고	생태 교육장 1식	5,200	마스터 플랜/ 설계용역	400	생태 교육관 건립	2,650	생태 체험 시설 등	2,150
도 비		1,440				795		645
군 비		3,360				1,855		1,505

□ 그간의 추진상황

- 2011. 10. 20 : 경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
- 2012. 03. 28 : 사업신청서 제출(군 ⇒ 도 ⇒ 산림청)
- 2013. 03. 26 : 백두대간생태교육장기본및설시설계용역공고(PQ방식)
- 2014. 06. 24 : 공사착수(토목, 조경, 건축, 전기, 폐기물, 통신 등)
- 2015. 09. 14 :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사업 착수
- 2016. 04. 22 : 게스트 하우스 건립사업 착수(4동/8실)

□ 향후계획

- 2016. 10. : 전시시설 및 게스트 하우스 건립사업 준공
- 2016. 10. :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시범운영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대비표

□ 입장료

구 분		관람료(입장료)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7~12	노인 65 이상	장애인	국가 유공자
거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개인	2,000	1,000	500	무료	무료	무료
	단체 (20인이상)	1,000	500	300	무료	무료	무료
남원시 백두대간생 태교육장	개인	2,000	1,500	1,000	면제	면제	면제
	단체 (20이상)	1,500	1,000	500	면제	면제	면제
상주 백두대간생 태교육장	개인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단체 (30이상)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거창천적 생태과학관	개인	2,000	1,000	500	무료	무료	무료
	단체	1,000	500	300	무료	무료	무료
거창군 사과테마파 크	개인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단체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 어른 : 19세 이상 65세 이하.

청소년 군인 : 13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 및 하사 이하 군인.

어린이 : 7세 이상 13세 이하

□ 시설사용료

구분	시설명	이용면적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성수기	비수기	
거창 백두대간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	32.81 m ²	1동/1층	70,000	50,000	사용인원 4명 및 차량1대
		30.82 m ²	1동/2층	70,000	50,000	사용인원 4명 및 차량1대
	교육세미나실	81.55 m ²	본관/3층	4시간	일괄:50,000	냉난방 시설, 프리젠테이션, 의자, 테이블 비치
				8시간	일괄:100,000	
1일				일괄:150,000		
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	숙박시설	30m ²	1동/1일	70,000	50,000	사용인원 6명 및 차량2대
		46m ²	1동/1일	90,000	60,000	사용인원 9명 및 차량2대
		62 ~ 74m ²	1동/1일	150,000	110,000	사용인원 15명 및 차량4대
		100m ²	1실/1일	250,000	180,000	사용인원25명 및 차량6대
	편의시설	다목적 강의실	1시간	20,000	-	사용인원 4명 및 차량1대
		잔디광장	1동/2층	15,000	-	사용인원 4명 및 차량1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숙박시설 (트리하우스)	3명이하 (29.12m ²)	1동/1일		주말:150,000 주중:100,000	사용인원 3명이하
		4명~6명 (29.12m ²)	1동/1일		주말:170,000 주중:120,000	사용인원 4명~6명
	2층교육장	명상실 I (96.7m ²)	4시간		일괄:100,000	냉난방 시설 1회 30,000원 1회 기준 4시간
			8시간		일괄:140,000	
			1일		일괄:210,000	
금원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숲속의집)	34m ²	1동/1실	70,000	49,000	사용인원 6명
		48m ²	1동/1실	100,000	70,000	사용인원 10명
		62m ²	1동/실	120,000	84,000	사용인원 13명
거창 국민여가캠 핑장 (월성)	캐빈하우스	복층 6인용	1동/1실	140,000	주말:100,000 주중:80,000	사용인원 6명
	방갈로	4인용	1동/1실	120,000	주말:80,000 주중:60,000	사용인원 4명

※ 성수기 :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보통 7월 중순~8월 중순까지임)

※ 거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아래에 위치한 덕유산 유스호텔에서는 일괄 6만원

〔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8. 22.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8. 23.

2. 개정이유

-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사업자 및 지역생산 건설자재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건설기계와 지역생산 우수 건설자재 우선사용 규정 신설(안 제3조제8항, 제4조제2항)
 - 군수와 지역건설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지역건설기계와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 우선사용 노력,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건설 근로자 등을 배제하지 아니함.
- 나. 위원회 성별균형 규정 신설(안 제8조제1항)
 - 특별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재검토행 규제일몰제 도입(안 제13조)
 - 경쟁제한적 차별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6. 6. 15. ~ 2016. 7. 5.

(나) 예고결과: 반영함(제3조제6항, 제4조제2항)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제8조제1항)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15. 4. 3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차별적 규제로 경쟁제한성 우려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를 권고한 사항이나,
-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등을 해당조례에 명시하는 경우 허용하고 있으므로
-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근로자, 건설기계사업자 및 지역생산 우수건설자재를 보호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 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 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 차. (생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 거.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나. (생략)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69호, 2015.6.22., 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2015.5.18.] [법률 제13329호, 2015.5.18., 일부개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 설정에 관하여는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7.16.]

부칙 <제12698호, 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규제기요틴 경제과제) 개선 권고

1.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55('15.1.23.) 관련입니다.

2. 우리위원회는 위 문서에 의거 2015. 1. 30.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규제개혁 및 규제부서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2014. 12월 민관합동회의에서 공정위·행자부 소관 규제기요틴 경제과제로 선정된 역외기업을 차별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지역건설 산업활성화조례, LED조명보급조례 등)에 대한 개선 추진방향 설명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업무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 그 이후 우리위원회가 관련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한 최종 개선권고안을 불임1.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자치단체별로 해당 조례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15. 5. 29.(금)까지 불임2. 양식에 의거 귀 시도 및 산하 기초단체(시·군·구)의 개선 추진계획을 취합하여 우리위원회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1.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권고안 1부

불임2. 지방자치단체별 개선대상 규제 현황(개선 추진계획안 양식 포함) 1부. 끝.



공정거래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법무담당관), 대구광역시(규제개혁추진단장), 인천광역시(규제개혁추진단), 강원도지사(규제개혁추진단장), 대전광역시(규제개혁추진단장), 충청북도지사(규제개혁추진단), 울산광역시(규제개혁추진단장), 충청남도지사(규제개혁추진단장), 경기도지사(규제개혁추진단장), 전라북도지사(규제개혁추진단장), 전라남도지사(규제개혁추진단장), 경상남도지사(규제개혁추진단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규제개혁추진단장), 세종특별자치시(규제개혁법무담당관), 광주광역시(규제개혁추진단장), 경상북도지사(경북개혁추진단장), 부산광역시(규제개혁추진단장)

행정사무관 이시완 팀장 김오식 경쟁제한규제 전결 2015. 4. 30.
개혁작업단 강신민
단장

협조자

시행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2015. 4. 30.) 접수 규제개혁추진단-1592 (2015. 4. 30.)
-311

우 704-841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 <http://www.ftc.go.kr>

전화번호 044-200-4664 팩스번호 044200-4679 / llbear@ftc.go.kr / 비공개(5)

"대한민국! 2014년 UN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 - 3회 연속 -"

역외지역 차별 경쟁제한적 조례 개선 권고안

(규제기요틴 경제과제)

2015. 4.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1. 추진경위

□ '14. 12.28.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역외기업을 차별하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건설, LED조명, 농업, 문화예술분야) 개선 결정

○ 공정위·행자부 소관 규제기요틴 경제과제*로 채택(商議 건의)

- 건설산업조례 등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지역기업을 우대하고 역외기업의 진입을 억제하는 경쟁제한적인 차별적 규제에 해당
- 법령의 위임 없이 계약상대방이나 주민에게 권리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지방계약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취지에 반하여 합법성도 결여되므로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

*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

개선대상 자치법규 현황

개선 대상	규제 내용	관련 자치단체
건설산업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비율 확대(50%~70% 이상) ○ 장비·자재(50%~70% 이상) 우선 사용 ○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 민간개발 공사 지역업체 참여, 직접시공 확대 ○ 건설업체 등록 일정기간 경과 후 입찰 참가자격 부여 	16개 광역(서울제외), 109개 기초단체
LED조명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등 조명 교체시 지역업체 LED조명 우선 사용 	8개 광역(대구, 광주, 울산, 경남북, 전남북, 충남)
로컬푸드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구매, 지자체 주관행사 지역농식품 우선 사용 ○ 학교급식 우선 사용, 부족 시 인근지역 농식품 우선 사용 	3개 광역(대구, 울산, 세종) 15개 기초단체
제주도문화예술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건물에 제주지역 작가의 작품 우선 설치 	1개 광역(제주)

※ 상기 과제 중 로컬푸드조례는 주무부처(농식품부)가 공공급식에서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위한 입법추진중인 점을 감안 금번 개선대상에서 제외

2. 분야별 개선권고 방안

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1) 규제내용 및 문제점

-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비율 확대, 장비·자재의 우선사용과 지역근로자의 우선고용, 민간개발 지역업체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비율 확대 (16개 광역 및 109개 기초 지자체)

<○○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 ⑤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생략
 2. 하도급의 경우 : 전체 하도급 중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높이도록 권장
 3. 건설자재의 경우 : 지역건설산업 체에서 생산하는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 또는 사용 권장
 4.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 권장
- ⑥ 시장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권장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
- ⑦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에 거주하는 인부의 사용을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상위법령 근거 여부 :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관련규정에 근거조항은 없음
 - * 정부는 '08.1.1.부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공사 발주시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을 주도록 의무를 부과한 건산법상의 의무하도급제를 폐지
 - 사실상 의무하도급제의 부활로 그 선언적·권고적 규정 형식에도 불구하고 관급공사 계약 시 계약상대방의 이익제한 또는 불리한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조건을 부여하는 근거로 운영할 우려
 - 지방자치법 제22조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 취지에 반함
 - *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률의 위임이 있을 경우 주민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또는 벌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 지방계약법 제6조: 지방계약법 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금지

- 경쟁제한성 : 차별적 규제로 경쟁제한성 있음
 - 동 규제는 타 지역 건설업체에 비해 역내업체를 차별적으로 우대함으로써 진입규제 효과가 발생
 - 지역 내 수혜업체의 경우 단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으나 경쟁보다 지역보호에 안주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경영혁신, 가격인하, 품질개선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우려
 - * 지역건설업체 우대는 영세중소건설업체 수 증가로 경쟁력 약화를 초래, 지자체 발주 공사 물량 확보 후 통행세 성격의 경제적 지대만 챙기려는 부적격 건설업체 양산 우려
 - 특히, 기초자치단체간의 조밀한 규제는 광역자치단체내 인접 사군구 소재 업체의 상호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 후생을 침해
 - * 조례에 의한 지역 건설업체 차별적 우대가 인근 지자체에 파급되어 시장 진입을 상호 봉쇄, 역외 업체는 공사수주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설립 또는 휴면 건설업체 인수를 통한 우회진입 등의 비효율을 초래

2) 개선권고 방안 : 폐지 또는 개선

-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역실정상 불가피할 경우 탄력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함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현행제도를 유지
 - 3년을 주기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일몰규정 도입(3년 재검토일몰제)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
 -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존치가 불가피한 경우 의무하도급비율조항은 삭제하되, 지자체발주공사에 국한하여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할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해당 조례에 명시
 - * 계약상대방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무하도급 및 우선 고용비율을 미준수한 경우 불이익 제공금지, 역외업체의 하도급업체 선정시 불합리한 사유에 의한 역내업체 배제 금지규정 신설 등
 - 의무고용비율을 규정하였을 경우 이를 삭제하되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역노동자 우선고용조항은 존치

~ 중략 ~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8. 22.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8. 23.

2. 개정이유

-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임대료 반환규정을 개선하여 농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임대료 반환이 재량이 아닌 당연히 반환하는 규정으로 개선(안 제12조)
 - (현행) 반환할 수 있다. → (개정) 반환한다.
- 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삭제(안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 모든 책임을 임차인에게 지도록 하는 규정은 민법상 손해 배상책임에 관한 특칙을 조례로 두는 것이므로 법령위반 사항에 해당되어 삭제
- 다. 위원회 성별균형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안 제19조제1항)
 - (현행) 특별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정) 특별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법령체계상 맞지 않은 내용 삭제(안 제23조)

- 조례에서 규칙을 준용한다는 표현은 법령체계상 맞지 않아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민법」 제750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6. 6. 24. ~ 2016. 7.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안 제19조제1항)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임대료 반환규정을 재량이 아닌 당연히 반환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여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 위원회의 성별균형 규정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농업기계촉진법」

[시행 2016.2.12.] [법률 제13465호, 2015.8.11., 일부개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시행 2016.2.4.] [법률 제13125호, 2015.2.3., 일부개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69호, 2015.6.22., 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2698호, 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3조 ~ 제10조 (생략)